

環境保全法令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연재 I>

이 質疑·回信集은

'86년 12월 31일 法律 제3903호로 개정된
環境保全法の 제분야에 대하여 同法 개정 이후
'88년 3월 7일까지 環境庁에 관계기관과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된 사항을 庁의 관계부서가 回信한 내용으로
環境保全法令의 순서에 따라 수록한 것이다.

目 次

1. 環境影響評價

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範圍

2. 排出施設

가. 面刀器 生産工程의 廢水排出施設 該當與否

나. 人造皮革製品 生産施設의 排出施設 該當與否

다. 水産物 冷蔵施設의 排出施設 該當與否

라. 廢水가 排出되지 않는 境遇에도 廢水 排出施設 該當
與否

3. 排出許用基準

가. 大氣汚染에 있어서 標準酸素濃度 適用時의 排出許用基準
適用

나. 쓰레기埋立地設 浸出水 處理施設의 設置基準 및 放流水 施設

4.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가. 排出施設 設置許可에 防止施設 包含與否

나. 廢水委託處理者는 建築法等 他法令의 規制에 關係없이
許可可能 與否

다. 廢水再利用施設도 排出施設 設置許可對象 與否

라. 生産綠地地域안에서 排出施設 設置可能 與否

마. 廢水委託者指定과 排出施設 設置許可와의 關係

바. 排出施設 設置檢査 遲延時 試驗稼働期間 延長可能
與否

사. 試驗稼働命令時 試驗稼働對象施設의 範圍

아. 排出施設 設置許可證 交付方式

1. 환경영향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烏山觀光株式會社 ('88.1.11)

回信: 評價 31661-442 ('88.1.18)

2. 質疑內容

當社は 70年度에 골프장(18홀)을 施設하여
골프장을 經營하고 있는 觀光事業體로서 事業擴
張計劃에 따라 9홀을 增設하고자 하는데 環境影
響評價를 받아야 하는지?

3. 回信內容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이 아니다.

4. 理由

골프장업의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範圍는 18 홀以上の 施設을 新規로 造成하는 境遇로 限定되어 있어, 既 造成된 골프장 施設의 規模如否와는 關係가 없기 때문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5 條, 環境保全法施行令 第 4 條의 2, (別表 1)

2. 배출시설

가 면도기생산공정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城東區城水洞 2 街 安全社 (株)

回信: 水管 01254-12328('87.12.26)

2. 質疑內容

○ 面力器를 生産하는 小規模 工程으로 아래와 같은 施設을 保有하고 있는 境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別表 2 의 廢水排出施設中 “마, 加工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 施設”에 包含되는 것으로 廢水排出施設에 該當되는지 與否?

* 施設內譯

名 稱	規 格	數 量	備 考
表面處理施設	容積 80 리터	3 臺	使用用水量時 間當 20 리터
세척시설	容積 5 리터	2 臺	
手動式現像施設	容積 2 리터	3 臺	

3. 回信內容

面力器生産工程의 施設을 檢討한 바,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2 의 廢水排出施設中 區分欄 “마, 加工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施設과 버, 寫眞處理施設”에는 該當되나, 各 施設에서 規模가 同 規則 別表 2 의 “廢水排出施設” 施設合計欄의 規格以下이므로 廢水排出施設에 該當되지 않는다.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 3 條 (別表 2)

나. 인조피혁제품 생산시설의 배출시설해당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경기도 양주군 사회 31813-1651('87. 7.20)

回信: 水管 31813-7558('87.7.31)

2. 質疑內容

1) 纖維加工品을 主 原料로 表面處理와 水洗過程을 거쳐 模造皮革을 生産함에 있어, 本 業種이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2 의 廢水排出施設 “사” 號에 該當되는지? 또는 “카” 號에 該當되는지?

가) 甲說: 模造皮革을 生産하나 原料와 生産工程이 纖維加工이므로 “카” 號인 纖維加工 業種에 該當됨.

나) 乙說: 纖維原綴을 主 原料로 工程이 이뤄지나 生産製品이 가죽으로 “사” 號인 皮革製造 施設에 該當됨.

2) 水洗過程에서 發生되는 D.M.F가 含有된 廢水를 放流하지 않고 집수 후 他 業所로 輸送하여 再生處理할 境遇 環境保全法 第 15 條에 依한 許可對象施設이 되는지의 與否

가) 甲說: 生産工程에 있어 事實上 放流 廢水가 없으므로 許加對象施設에 包含되지 않음.

나) 乙說: 放流廢水가 없다 할지라도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2 의 施設에 該當함으로 許可對象인.

3. 回信內容

人造가죽 製造工程은 同法 施行規則 別表 2, 다. 廢水排出施設中 “카” 纖維製造施設에 該當 (韓國產業標準 分類 32194. 參照)되며, 同 製造工程이 세척시설등 廢水排出施設에 該當될 때에는 同法 第 15 條의 規程에 依하여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同法 第 15 條의 2 第 1 項 但書 規程에 依하여 事業者가 防止施設 設置外의 方法으로 廢水를 委託處理코자 할 때에는 環境廳告示 第 83-8(88.2.9) 號에 依하여 排出施設設置許可機關으로부터 委託處理者로 指定을 받아 防止施設의 設置를 免除받을 수 있다.

다. 수산물 냉장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성진企業 (株) 第22號

回信：水管 01254-10015 ('87.10.20)

2. 質疑內容

本 공장은 水産物 冷凍, 冷蔵施設 공장으로서 既存建物 1,342㎡에 冷蔵室 增築 (439.5㎡) 을 爲하여 建築許可 申請書를 提出하였던 바, 商業地 域에는 公害공장의 建築許可가 不可하다는 回信 을 받았는 바, 單純한 冷蔵室 增縮이 環境保全法 上的 公害공장의 增築에 該當하는지?

3. 回信內容

環境保全法上的 排出施設로서 建築法에 依한 規制對象이 된다.

4. 理由

海産物 冷凍·冷蔵用 施設은 環境保全法施行規 則 別表2의 食料品製造施設에 該當되며, 그 施設規模가 세척시설의 境遇 容積 2㎡以上 또는 時間當 用水 容量이 1㎡以上일 境遇에는 環境保 全法上的 排出施設에 該當되므로 建築法上的 公 害公장에 該當되어 建築法에 依한 規制對象이 되 기 때문임.

5. 參照條文

建築法施行令 第66條第2項(別表2)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3條(別表2)

라.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 설 해당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대유유회 第641號('87.10.6)

回信：水管 01254-9852('87.10.16)

2. 質疑內容

○ 當公장은 프로필렌 및 에틸렌을 主 原料로 重合反應시켜 폴리프로필렌 및 高密度 폴리에틸 렌을 製造하는 1次 石油化學製品 製造業으로 粉 末상태의 各種 安定劑(酸化防止劑, 紫外線防止 劑等)를 混合하는 混合施設과 促媒製造工程上的 混合組가 있음

○ 環境保全法施行規則 改正('87.8.3) 으로 産業用 化學製品製造施設에 混合施設 및 混合組 도 排出施設에 일응 該當되는 것으로 보이나, 當 公장의 境遇는 위 混合施設에서 전혀 廢水가 排 出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境遇도 新規 排出施設 로 規定하여 반드시 許可를 받아야 하는지?

3. 回信內容

廢水排出施設이 아님으로 許可對象이 아니다.

4. 理由

環境保全法上的 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水質· 土壤을 汚染하거나 國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에 被 害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汚染物質을 排 出되지 않는 限 排出施設로 볼 수 없기 때문임.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2條 第12號, 同法 施行規則第 3條(別表2)

3. 배출허용기준

가. 대기오염에 있어서 표준산소농도 적용시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원주 지도 36122-685('87.9.4)

回信：法務 02101-9418('87.9.25)

2. 質疑內容

시멘트製造施設의 하나인 소성로에서의 粉塵 排出濃도를 測定口에서 實測해본 結果 450mg/Sm³이었고, 이때의 實測酸素濃도는 10%, 流量 은 50,000 Sm³/日인 境遇

1) 시멘트 소성로의 粉塵 排出許容基準은 法 上 300mg/Sm³(13%)인 바, 同 許容基準을 超過한 超過濃도는 150mg/Sm³이고, 이때 適 用해야 될 流量은 50,000 Sm³/日로 해야 하는 지?

2) 시멘트소성로의 標準酸素濃도는 13%인바 同 標準酸素濃도 適用시의 排出許用基準 適用 및 流量算定方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3. 回信內容

賦課金 算定시의 排出許容基準 및 排出濃도는 標準酸素濃도를 適用한 排出許容基準 및 排出濃 度이어야 하며, 同 標準酸素濃도를 適用한 排出 濃도는 327.3mg/Sm³로 算定되는 바, 標準酸 素濃도 適用시의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한 超過濃 도는 27.3mg/Sm³이다. 이때 適用해야될 流量 도 標準酸素濃도下에서의 流量이어야 하며, 同 標準酸素濃도下에서의 流量은 68.750 Sm³/日이 다.

4. 參照條文

環境汚染工程試驗法, 環境保全施行規則 第 15 條(別表 6)

나.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산화技術研究團

回信:水管 01254-8204('87.8.21)

2. 質疑內容

쓰레기埋立施設에서 排出되는 浸出水를 處理하는 施設이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2의 4에 該當되는 排出施設인가? 同規定에 該當이 되지않을 境遇 同 浸出水 處理施設 設置基準 및 放流水 水質基準은 어느 規定에서 어떻게 定하고 있는 지?

3. 回信內容

쓰레기埋立施設 浸出水 處理施設의 設置基準은 없으며, 放流水 水質基準은 BOD150ppm 以下이고 環境保全法上的 排出施設은 아니다. 쓰레기埋立施設의 浸出水 處理施設은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2의 廢水排出施設로 볼 수 없으며, 同 處理施設의 設置基準은 法으로 規制하고 있지는 않으나 放流水 水質基準은 廢棄物管理法施行規則 第 27條第 1項 1號 “나”의 規定에 의하여 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 150ppm 以下로 放流하여야 한다.

4. 參照條文

廢棄物處理法 第 14 條, 同法 施行規則 第 33條 第 24 條, 第 25 條 및 第 27 條,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 3 條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방지시설 포함 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釜山 지도 31602-808('87.7.11)

回信:大管 31720-7593('87.8.3)

2. 質疑內容

排出施設 設置許可에 防止施設도 包含되는지?

3. 回信內容

許可事項에 包含된다.

4. 理由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等を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處理하기 爲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도록 하였고 排出施設設置許可 申請時에는 防止施設 設置內譯書를 添附하도록 하여, 設置하고자 하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對한 防止施設의 適正與否등을 檢討·判斷하여 同 施設의 許可與否를 決定하게 되므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事項에는 防止施設도 包含된다고 보아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 및 第 15 條의 2, 同法 施行令 第 16 條

나. 폐수위탁처리자는 건축법등 타법령의 규제에 관계없이 허가 가능 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서울 計劃 31720-3213('87.12.18)

回信:大管 31720-509('88.1.19)

2. 質疑內容

建築法施行令 第 66 條第 2 項의 規定에 依據 制限된 建築物의 사업장일지라도 環境廳 告示 第 87-20 號의 規定에 依한 廢水委託者 指定을 받은 業所라면 排出施設 設置許可가 可能한지 與否?

3. 回信內容

許可할 수 없다.

4. 理由

廢水委託者 指定을 받은 業所라도 委託指定을 받은 對象施設이 廢水排出施設에서 除外되는 것이 아니므로 委託指定 與否가 環境保全法 以外의 他法 適用에 變化를 주지는 못함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 16 條

建築法施行令 第 66 條

環境廳 告示 第 87-20 號

다. 폐수재이용시설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民願人

回信:水管 01254-7844

2. 質疑內容

공장의 壓鉛工程에 使用되는 冷却水を 外部로 流出하지 않고 계속 순환시켜 再 使用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계속 순환 使用하는 壓鉛공장도 廢水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야 하는지?

3. 回信內容

壓鉛施設이 動力 30HP以上일 境遇에는 廢水排出施設에 該當되며, 따라서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廢水を 放流하지 않고 再利用한다면 環境廳長의 指定 또는 承認을 얻어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않을 수 있다.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 및 第15條의 2, 同法 施行規則 第3條 및 第19條

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배출시설 설치가능 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民願人

回信: 水管 01254-7703('87.8.6)

2. 質疑內容

建築法施行令 第66條第1項第4號에 依하면 生産綠地地域안에서는 公害공장(두부製造施設)의 建築許可가 不可能하다고 思料되는 바, 위 地域에서 建築許可가 用途變更을 받았을 境遇 排出施設 設置許可가 可能한지?

3. 回信內容

排出施設 設置許可가 可能하다.

4. 理 由

環境保全法上 排出施設 設置를 制限할 수 있는 地域은 “水道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上水保護區域 또는 이에 隣接한 地域”으로 定하고 있으며, 그 外에 建築法등 他法令에 依하여 規制되는 境遇에도 許可를 制限할 수 있음. 그러나 두부製造施設은 建築施行令 第66條(別表4) 生産綠地地域에서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 第10號에 依한 食品공장에 該當되므로 建築許可 및 排出施設 設置許可가 可能한 것으로 判斷됨.

5. 參照條文

建築法施行令 第66條

마. 폐수위탁자지정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와의 관계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세문기업(株) 第1號('88.2.1)

回信: 水管31813-1646('88.2.16)

2. 質疑內容

廢水委託者의 指定條件에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으나 區廳에서 公장이 未登錄狀態로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 바, 꼭 許可를 받아야 하는지의 與否와 萬若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지 않으면 委託者 指定關係가 取消되는지 與否 및 發生되는 廢水を 집수조를 設置하여 全量 委託處理하고 있는데 無許可 業所로 法에 抵觸되어 告發되어야 하는지 與否?

3. 回信內容

無許可 排出施設로 刑事處罰對象이다.

4. 理 由

廢水 排出施設을 -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同 排出施設로부터 發生되는 廢水を 委託處理 및 委託者 指定 與否에 關係없이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야 하며, 만일 委託者 指定만 받고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得하지 않은 狀態에서 同 排出施設을 가동 操業하는 境遇에는 無許可 排出施設이 되기 때문임.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3

바. 배출시설 설치검사 지연시 시험가동기간 연장가능 여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釜山 지도 31813-2471('87.12.18)

回信: 水管 31813-12517('87.12.30)

2. 質疑內容

廢水 排出施設에 對한 設置檢査를 하기 爲한 汚染物質採取檢査가 事業主의 防止施設 運轉管理未熟으로 因하여 시험가동기간 滿了日의 시점에서 汚染物質을 採取하게 된 境遇, 試料分析期間동안 만큼 시험가동기간이 超過되게 되는 바, 이 境遇 超過되는 期間을 시험가동 期間으로 볼 수 있는 지?

3. 回信內容

시험가동기간으로 볼 수 없다.

4. 理由

排出施設의 檢査는 시험가동기간내에 完了하도록 義務化되어 있는 바, 檢査完了가 遲延된다해서 시험가동기간이 延長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시험가동기간 滿了日에 隣接한 시점에 汚染物質을 採取하여 檢査하였다함은 適法한 業務處理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理由로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 26條의 規定에 依한 시험가동기간을 超過한 期間을 시험가동기간의 延長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 26條 및 第 27條

사. 시험가동명령시 시험가동대상시설의 범위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原州 지도 36122-685('87.9.4)

回信 : 法務 02121-9478('87.9.25)

2. 質疑內容

排出施設 設置完了申告를 받아 시험가동 命令時에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 完了申告時 內容全體를 가동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一部를 가동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許可받은 施設 全體를 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4. 理由

排出施設의 시험가동은 防止施設에 影響을 줄 수 있는 排出施設 全體를 가동토록하여 배출시설의 성능과 이에 따른 防止施設의 處理效率등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適合與否를 判斷하여야 하기 때문임.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6條, 同法 施行規則 第 26條 및 第 27條

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교부방식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計劃 31602-155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5)

2. 質疑內容

同一 사업장(同一所在地)內에서 業種이 다른 2個의 工場을 運營하며 防止施設도 別個로 設置運營時 排出施設許可證을 業種別로 交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統合하여 交付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統合 또는 分離하여 交付할 수 있다.

4. 理由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는 對象物 許可로서 當該 行政行爲의 對象이된 施設別로 許可證을 交付하는 것이 原則이나 許可받은 者가 同一人일 境遇에는 許可한 內容을 統合하여 許可證을 交付할 수도 있다. 다만, 統合交付時에는 排出施設別로 單位防止施設을 區分하여 記載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條, 同法 施行令 第 16條, 同法 施行規則 第 16條

< 다음호에 계속 >

